

2022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 접수요령

202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종합건설사업자가 제출하는 재무제표 관계서류의 접수요령과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- 아 래 -

1. 대 상 : 2022. 12. 31까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

2. 기 간 : 2023. 4. 3(월) ~ 4. 17(월)

※ 개인사업자는 6. 2(금)까지, 성실신고 확인대상대상자는 6. 22(목)까지

※ 기간 내 제출된 서류 외에는 일체의 추가·보완·수정 불가

3. 제출처 및 방법

○ 회 원 사 : 본사 소재지 및 제출일 기준 소속 시·도회

○ 비회원사 : 대한건설협회 본회 정보관리실

○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방문

※ 재무제표 온라인 내용확정과는 별개로 관련 신고·증빙서류 반드시 제출요

4. 제출서류

가. 필수 제출서류(재무제표)

- 2022년도 중 도래한 정기결산일 기준으로 작성

- 재무제표는 연도비교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, 손익계산서는 건설매출액과 건설업 이외의 매출액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

※ 손익계산서에서 건설매출액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매출액구분확인서 제출

- 검토보고서, 세무조정계산서, 결산(보고)서, 표준(요약)재무제표는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제출·접수 불가

- 외감대상 기업은 감사보고서를, 외감대상이 아닌 기업은 재무제표확인원(감사보고서도 가능) 제출

나. 기타서류(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)

현금흐름비율 및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을 평가 받고자 하는 업체는 **현금흐름표** 및 **건설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**를 제출하여야 함

- 현금흐름표 : 공인회계사(또는 세무사)의 확인을 받아 제출
- 건설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: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(공인회계사의 등록증 사본 첨부)
※ 세무사가 확인한 경우는 시공능력평가 자료로만 인정 (PQ·적격심사시 기술능력평가 자료로는 인정되지 않음)

5. 1차(기성실적) 신고 또는 2차(재무제표) 신고만 완료한 건설사업자 경우

- 1차(건설공사 기성실적) 신고 후 2차(재무제표 관계서류) 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: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 불가(기성실적서류는 발급 가능)
- 1차(건설공사 기성실적) 신고를 하지 않고 2차(재무제표 관계서류) 신고만 완료한 건설사업자 :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 불가(경영상태서류는 발급 가능)

6. 유의사항

가. 국세청 재무상태(과세신고) 신고자료 연계하여 자료전송

- 동의한 업체의 경우 신고시스템 입력은 간소화되나, 재무제표 관계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- 「현금흐름표」는 건설사업자 반드시 직접 입력하여야 하고, 차입금은 재무상태표에 해당 계정과목을 모두 합산하여 입력
※ 차입금은 협회 검토과정에 신고한 값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

나. 종합·전문 겸업업체의 재무상태 관계서류 제출처 일원화

- 제출처 우선 순위는 ① 대한건설협회, ② 대한전문건설협회, ③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, ④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
- 겸업업체의 경우 재무제표 관계자료를 「대한건설협회」에만 신고·서류 제출 가능(공동활용에 동의한 경우, 평가된 재무제표 관계자료는 소관협회로 통보 예정)
- 종합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액·경영상태 산출 등을 원하지는 않는 겸업업체의 경우, 해당 차순위 협회에 재무제표 관계서류 신고

다.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에서 종합건설사업자로 전환한 경우



업종전환의 경우 신고 방법

【신고대상】

- 2023. 1. 1. 이후 종합건설사업자로 **업종전환한 경우**

【신고내용】

- ① 재무제표 관계서류 신고
- ② **건설기술인보유현황표 신고**

【신고방법】

재무제표 관계서류 신고항목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대한건설협회 신고안내시스템(siljuk.cak.or.kr)에 접속 ② 사업자등록번호/범용공동인증서 확인후 로그인 ③ 공사실적·재무제표 신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고서 작성·확정 클릭 ④ 신고서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순서대로 작성
추가된 신고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업종전환한 건설사업자의 경우) 건설기술인명단 항목** 클릭 및 입력 (’22.12.31일 기준 재직 중 건설기술인 명단 입력)

* 재무제표 관계서류 신고항목 : 기존 건설사업자와 신고방법 동일

** 건설기술인명단 항목 : 업종전환한 건설사업자에게만 한시적·개별적으로 생성

【서류접수 방법】

- 재무제표 관계서류 접수방법 : 기존 종합건설사업자와 동일
- **건설기술인명단 접수방법** : 출력물(건설공사실적신고 표지(Ⅱ)와 건설기술인 신고증빙서류(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에 한함)를 함께 접수